

의안번호	2203661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4G3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6년 0.5조원, 2030년 1.0조원 등 2026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0년까지 발생함
 -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 이후 발생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년 61억원 등 2031~2033년 3년간 185억원(연평균 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6)						-0	-0	-0	-00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7제1항)	-1.1	-2.3	-3.3	-2.2	-1.0				-100
계	-1.1	-2.3	-3.3	-2.2	-1.0	0	0	0	-10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청년 외 근로자: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적용기한: (현행) '24.12.31. → (개정안) '27.12.31.	
2	안 제29조의7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4.12.31. →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2	안 제29조의7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

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등은 만기 공제금을 2030년에 수령하고, 해당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31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이므로,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1~2033년 동안 발생

나. 고용중대 세액공제 일몰연장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년간 공제혜택을 반영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

- t 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가 $(t+1)$ 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t+1)$ 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이 충족된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여 각 연도의 공제실적을 신고연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지속해서 감면받으며, 상시근로자수의 전년대비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은 없다고 가정

□ 2023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고용중대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계
 - 참고로,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중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통합
 -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고용중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 30조의4)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선택적용이 가능
- 개정안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경우, 2027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선택적용이 가능하며 개별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택할 것을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실제보다 세수효과가 과다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9~2023년 신고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단,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9~202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 (2021년 기준)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감률 전망 (2024.10.)¹⁾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
 - 현행 성과보상기금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

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일정 비율 만큼 세액을 감면

-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액 수령시기와 소득세 감면시기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제도시행 6년차부터 세액감면액 발생
 -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공제사업 만기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0년부터 발생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4년부터 발생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만기)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

[표 2]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현황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근로자
가입기간	5년		3년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핵심인력 720 + 기업 1,500)	5년간 3,000만원 이상 (청년 720 + 기업 1,200 + 정부 1,080)	3년간 1,008만원 (근로자 504 + 기업 504)
우대혜택	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¹⁾		
시행일	2014.8.21.	2018.6.1.	2021.10.18.
사업기간	계속사업	~2022년(한시 사업)	계속사업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고용부

주: 1)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에 가입하여 만기를 채운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예치해야 함)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실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3년 기준 38억원, 2024년은 157억원으로 전망됨

-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2020년 처음 발생하고,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 2024년 전망치는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

[표 3]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¹⁾ (전망)
소득세	29	31	38	157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과 공제사업별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5년 만기)에 2025년 가입 시, 만기 공제금 수령자는 2030년부터 발생, 소득세 감면은 203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8년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3년 만기)는 2024년 만기 공제금 수령자가 발생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5년부터 발생할 예정
 - 다만,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수(2021~2023년 연평균 583명)가 적고, 기존 공제사업들의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2023년 기준: 내일채움공제 39.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7.0%)

- 따라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계

-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을 활용하되 동 실적에는 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별 조세지출액을 구분할 필요
- 사업별로 조세지출액이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업별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

(3) 추계 결과

□ 2024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조세지출액 실적(157억원) 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약 57억원으로 추정

- 2023년의 조세지출액 실적은 대부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이므로, 2023년 조세지출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증가율(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4년도 조세지출액 추정
 -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2023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4,656명)는 2022년(3,089명) 대비 1.5배 규모로 증가
 - * 57억원(2024년) = 38억원(2023년) × 1.5
 - 2023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은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에 이루어짐

[표 4]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단위: 명, 억원)

가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 수	9,619	11,841	8,856	10,929	11,598	12,152	12,422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가입연도 +5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3,089	4,656	-	-	-	-	-
소득세 감면 연도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1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득세 감면액	38	57 ¹⁾	-	-	-	-	-

주: 1) 만기 공제금 수령자를 증가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에도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먼저 일몰 연장에 따른 2025~2027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추정하고,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추정
 - 2025~2027년 가입자 수는 2023년 가입자 수에 최근 5년(2018년~2023년) 가입자 수 연평균 증가율(0.96%)을 적용하여 추정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는 2025~2027년 가입자 수(추정치)에 가장 최근 연도 가입자 수 대비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비율(2023년 0.393=4,656명/11,841명, [표 4] 참조) 적용하여 추정
 -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에 비례하여 조세지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1~2033년 연간 소득세 감면액은 61~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 [표 5]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및 소득세 감면액 추정

(단위: 명, 억원)

가입 연도	2025	2026	2027
가입자 수	12,662	12,784	12,907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가입연도 +5년)	2030	2031	2032
만기 공제금 수령자 수	4,979	5,027	5,075
소득세 감면 연도 (만기 공제금 수령 연도 +1년)	2031	2032	2033
소득세 감면액	61	62	62

- 개정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31년 61억원 등 2031~2033년 3년간 185억원(연평균 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6)	-61	-62	-62	-185	-62

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몰연장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됨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²⁾수가 증가한 기업으로,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임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 공제하여 중소기업 1,100만원(비수도권은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을 공제
 - 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을 공제
- 기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비수도권 770만원)을 공제
- 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용관련 세제지원 항목이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2023년부터 시행 중
 - 이 중 기본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9년 7,317억원에서 2023년 2조 9,339억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는

2)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되므로, 2023년까지 실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실적임

[표 7]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신고기준)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계	7,317	12,812	17,960	24,166	29,339
소득세	1,972	4,283	6,336	8,898	11,191
법인세	5,345	8,529	11,625	15,268	18,148
- 중소기업	3,784	6,212	9,002	11,950	14,027
- 중견기업	846	1,300	1,491	2,061	2,396
- 대기업	714	1,017	1,131	1,257	1,72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고기준 실적을 발생연도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후,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2023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1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과 2022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3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발생연도
(단위: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¹⁾	중소·중견	A_{21}	A_{21}	A_{21}		
	대기업	B_{21}	B_{21}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		A_{22}	A_{22}	A_{22}	
	대기업		B_{22}	B_{22}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			A_{23}	A_{23}	A_{23}
	대기업			B_{23}	B_{23}	
계		$A_{21} + B_{21}$	$A_{21} + B_{21} + A_{22} + B_{22}$	$A_{21} + A_{22} + B_{22} + A_{23} + B_{23}$	$A_{22} + A_{23} + B_{23}$	A_{23}

주: 1. A는 중소·중견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1) 2021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0년 고용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 공제실적의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2023년 취업자수 증가율(1.2%)만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신규 공제액은 2025~202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징수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t 년도(신고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t+2)$ 년도까지, 대기업은 $(t+1)$ 년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19~2023년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하면, 2023년 신규 발생한 공제실적은 1조 1,194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19년부터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 없이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연도별·기업규모별로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 추계

[표 9]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발생연도별 신규 공제액 추정

(단위: 억원)

발생연도 (신고연도 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317	5,495	5,863	13,111	11,194
소득세	1,972	2,311	2,053	4,534	4,604
법인세	5,345	3,184	3,810	8,577	6,590
- 중소기업	3,784	2,428	2,790	6,732	4,504
- 중견기업	846	454	192	1,416	789
- 대기업	714	303	828	429	1,29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을 바탕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

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총 1조 3,564억원으로 추정

-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구분
 - － 지역별 구분은 2019~2022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구분
 - ※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³⁾

3)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표 5] 2023년 신규 공제액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구분 추정치

(단위: 억원, %)

	2023년 신규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
		구분	비중 (B)	구분	비중 (C)	
소득세	4,6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702
				일반	47.2	1,520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30
				일반	47.2	652
법인세 (중소기업)	4,5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665
				일반	47.2	1,487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14
				일반	47.2	638
법인세 (중견기업)	789	수도권	72.3	청년 등	59.9	342
				일반	40.1	229
		비수도권	27.7	청년 등	59.9	131
				일반	40.1	87
법인세 (대기업)	1,297	수도권	72.3	청년 등	100.0	938
		비수도권	27.7	청년 등	100.0	359
계						11,194

- 2023년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 각각에 취업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1조 1,328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실적치인 1.2% 적용

[표 6]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23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A)	'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A×101.2%)	기업규모 별 구분
소득세	수도권	청년 등	1,702	1,722	4,659
		일반	1,520	1,538	
	비수도권	청년 등	730	739	
		일반	652	660	
법인세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665	1,685	4,558
		일반	1,487	1,505	
	비수도권	청년 등	714	723	
		일반	638	646	

법인세 (중견기업)	수도권	청년 등	342	346	798
		일반	229	232	
	비수도권	청년 등	131	133	
		일반	87	88	
법인세 (대기업)	수도권	청년 등	938	949	1,313
	비수도권	청년 등	359	363	
계				11,328	

□ (2025년 이후 공제액 추정) 개정안에 따른 향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5~2027년까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6~2030년(신고기준)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공제액을 추계
 - 2025~2027년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NABO, 2024.10)은 0.3~0.4% 수준으로, 공제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취업자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12] 2026~2028년(신고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신고연도	2026	2027	2028
소득세	4,719	4,747	4,761
법인세 (중소기업)	4,623	4,655	4,669
법인세 (중견기업)	810	816	818
법인세 (대기업)	1,330	1,340	1,344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NABO, 2024.10)	0.4	0.3	0.2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6년 0.5조원, 2031년 1.4조원 등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

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전망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년 신규 기업	11,482	11,482	10,152		
－ 중소·중견기업	10,152	10,152	10,152		
－ 대기업	1,330	1,330			
2026년 신규 기업		11,558	11,558	10,218	
－ 중소·중견기업		10,218	10,218	10,218	
－ 대기업		1,340	1,340		
2027년 신규 기업			11,592	11,592	10,248
－ 중소·중견기업			10,248	10,248	10,248
－ 대기업			1,344	1,344	
계	11,482	23,040	33,302	21,810	10,248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6년 1.1조원, 2030년 1.0조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조원(연평균 2.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0년까지 발생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7 제1항)	-1.1	-2.3	-3.3	-2.2	-1.0	-10.0	-2.0

IV. 부대의견

- 개별 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법 제29조의7제1항)가 아닌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제1항)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과다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고 가정하여 2025년 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혜택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비해 높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감면혜택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함

[표 15]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비교

(단위: 만원, %)

기업규모 별 지역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1,100→1,450 (31.8)	1,200→1,550 (19.2)	800→800 (0.0)	800→800 (0.0)	400→400 (0.0)	400→400 (0.0)
일반 상시근로자	700→850 (21.4)	770→950 (23.4)	450→450 (0.0)	450→450 (0.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안은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의 변동률(%)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